

#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500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8. 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(출자)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지방세·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

※ 설립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2를 발전기금으로 출연

다. 출자·출연금액

- 출연 예정금액 : 48,219천원

라. 주요사업
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
- 지방세수 확충과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, 학술행사 등의 사업수행
- 지방세제 개편 등 정책 연구

마. 기대효과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### 3. 관계법령

#### 가. 지방세기본법 제152조

< 출연의 근거 : 「지방세기본법」 >

- (제152조 제1항)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
- (제152조 제3항)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
### 4. 예산수반사항

가. 출연 예정금액 : 48,219천원

나.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(단위:천원)

2025년도 시 출연금	2024년도 시 출연금	전년대비 증감액
48,219	51,135	감 2,916

### 5. 그 밖의 참고사항

소관 실·과·소		세무1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명	세무1과장 유 승 무
	팀장 직위·성명	세정팀장 최 은 정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전산주사보 이 승 환(☎2686)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2 출연

## 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전전년도(2023년) 보통세 세입 결산액(401,822,998천원)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 소요액	48,219	49,164	48,492	49,260	50,429	245,564
지방세정 운영·관리	48,219	49,164	48,492	49,260	50,429	245,564
한국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 출연사업						

※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기획담당관 협의필

## 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경제국 세무1과 과장 유승무 팀장 최은정

## 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 (2025)	2차연도 (2026)	3차연도 (2027)	4차연도 (2028)	5차연도 (2029)	계	
<b>세 입</b>	401,822,998	409,700,000	404,100,000	410,500,000	420,242,000	2,046,364,998	
지방세	401,822,998	409,700,000	404,100,000	410,500,000	420,242,000	2,046,364,998	
<b>세 출</b>	48,219	49,164	48,492	49,260	50,429	245,564	
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사업	48,219	49,164	48,492	49,260	50,429	245,564	
	2023년 세입액 * (1.2/10,000)	2024년 세입액 * (1.2/10,000)	2025년 세입액 * (1.2/10,000)	2026년 세입액 * (1.2/10,000)	2027년 세입액 * (1.2/10,000)		
<b>재원 조달</b>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401,822,998	409,700,000	404,100,000	410,500,000	420,242,000	2,046,364,998
	지방세수입	401,822,998	409,700,000	404,100,000	410,500,000	420,242,000	2,046,364,998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□ 「지방세기본법」

**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**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영**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**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**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**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**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** 그 부분에 대해서만 **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**

□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**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**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**1만분의 1.2**
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**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**
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**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**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**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**하여야 한다.